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05호)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95호)
-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64호)
-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41호)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59호)
- 하영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595호)
-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56호)
-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36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1호)

2021.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개요	1
1.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05호)	1
2.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95호)	3
3.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64호)	4
4.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41호)	5
5.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59호)	6
6. 하영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95호)	8
7.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56호)	9
8.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36호)	10
9.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1호)	1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12
1.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3년→2년) 변경 등(김민철의원안)	12
2.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최혜영의원안)	28
3. 보육 이념의 범위에 국적을 포함(고영인의원안)	36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인재근의원안)	44
5.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 야기로 공공위험 발생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김성주의원안)	52
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적성·인성검사 실시(하영제의원안)	58
7.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인재근의원안)	64
8.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규정의 신설(안민석의원안)	69
9.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의무적 조사·점검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고민정의원안)	74

I. 개 요

1. 김민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민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1. 6. 4.
- (3) 회 부 일 : 2021. 6.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보육료라는 명칭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음. 다만, 어린이집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즉,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님.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

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차이가 나게 만드는 체계적인 정책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상의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상의 무상교육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2.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1. 7. 2.
- (3) 회 부 일 : 2021. 7.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3. 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2.
- (3) 회 부 일 : 2021. 7.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4.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4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7. 16.
- (3) 회 부 일 : 2021.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5. 김성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1. 7. 19.
- (3) 회 부 일 : 2021. 7.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각 시설의 의무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을 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상 아동의 유사성 및 어린이집의 다중이용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벌칙 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집

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기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또한, 시설상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

6. 하영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5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1. 7. 20.
- (3) 회 부 일 : 2021. 7.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학력이나 교육과정 이수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7.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인재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1. 8. 23.
- (3) 회 부 일 : 2021. 8.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다시 말해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라는 심리적 제재만 가능하고 경제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56조).

8.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민석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1. 8. 25.
- (3) 회 부 일 : 2021.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음.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식품비, 급식시설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급·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그래서 학교급식법상 지원 규정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9.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민정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1. 9. 10.
- (3) 회 부 일 : 2021.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징후를 선제적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건처리를 위한 기록으로 활용되는데 그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면서 그 영상정보도 같이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3년→2년) 변경 등(김민철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되,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무상보육) ①~⑥ (생략)	제34조(무상교육)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u>3년마다</u>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u>결정하여야</u> 한다.	⑦ ----- ----- ----- <u>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2년에 한 번씩</u> ----- ----- ----- ----- <u>결정하되,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유아</u>

현행	개정안
⑧ (생략)	<u>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와</u> <u>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u> <u>특히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u> <u>~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u> <u>비를 분리하여 어린이집과 유</u> <u>치원의 실질적인 유아 1인당</u> <u>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u> <u>유지되도록 하여야 ----.</u> ⑧ (현행과 같음)

나. 표준보육비용 및 표준유아교육비 개요

1)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와의 관계

□ 표준보육비용이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보육료)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4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¹⁾.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²⁾.

1) 제34조(무상보육)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2)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 >

구성 항목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퇴직금 ·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급·간식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교재 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 교구비 등
관리운영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19년에 실시된 연령별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는 8시간 보육 기준으로 0세반 1,017천원, 1세반 714천원, 2세반 580천원이며, 보육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0~2세 보육료는 8시간 표준보육비용 대비 97.9% 수준임.

<'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기준:월, 단위:천원)

항목 보육 시간	표준보육비용		관리운영비		교재 교구비		인건비	급간식비	시설 설비비
	12시간	8시간	12시간	8시간	12시간	8시간			
0세	1,039	1,017	58	39	56	53	858	33	35
1세	736	714	58	39	45	42	554	45	35
2세	603	580	58	39	43	39	423	45	35
3세	456	432	58	39	50	45	250	64	35
4-5세	420	396	58	39	52	48	212	64	35

-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지원 수준 >

(단위 : 천원)

구분	표준보육 비용('19년)	'19년		'20년		'21년	
		보육료	충족률	보육료	충족률	보육료	충족률
0세 반	1,017	939	92.3%	970	95.4%	1,012	99.5%
1세 반	714	664	93.0%	686	96.1%	713	99.8%
2세 반	580	510	87.9%	527	90.9%	547	94.3%

*자료: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제38조³⁾는 각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 보육료⁴⁾ 및 기타 경비의 상한선(수납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수납한도액)와 정부지원 보육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⁵⁾을 부모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자체가 해당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참고1] 시·도별 수납한도액 현황(2021년 기준)

어린이집	▪ 총비용 = 보육료(순보육비) + 필요경비(추가비용) ▪ 보육료의 결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보육료 외 추가 수납 불가능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보육료 외 부모로부터 추가 보육료 수납 가능하나,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로 통제 ▪ 필요경비의 결정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결정
------	--

3)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p.92

보육료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재료비(1회), 간식 재료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가 포함됨

5) 차액 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의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만 발생

□ 참고로, 정부는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⁶⁾을 도입하였고, 당초에는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여 실시함.

누리과정 비용지원은 순교육비·순보육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포함하지 않는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부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2) 표준유아교육비와 유아교육비와의 관계

□ 표준유아교육비란 만 3세~5세 유아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부담하는 비용(유아교육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⁷⁾.

6) 누리과정 제도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이며, 이 외 누리과정의 재원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있음.

7)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운영 경비로 구성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급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 구성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⁸⁾).

<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 >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항목		
표준 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통운영 경비
교원인건비, 직원인건비	교재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 표준유아교육비 산정방식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

(단위 : 천원)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표준 유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		실제 유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표준인건비	4,384	3,723	5,796	3,853
표준교육활동경비	807	670	1,067	694
표준공통운영경비	1,389	2,065	1,837	2,138
총계	6,580	6,458	8,700	6,685

※ 2020년 표준 원아수 : 685,000명(공립 236,165명, 사립 448,335명)

2020년 실제 원아수 : 612,265명(공립 178,628명, 사립 433,637명)

※ 반올림 오차로 인해 각 세부합과 총계가 다를 수 있음

※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아교육비는 표준유

8)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13년 22만원
→'20년 24만원→'21년 26만원으로 인상되었음.

-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25조⁹⁾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외에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기타 납부금(유치
원 원비)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추가로 수납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 원
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	▪ 원비 = 교육비용(순교육비) + 그 밖의 납부금(추가비용) ▪ 원비의 결정 -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
-----	--

9)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
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
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
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3. 27.>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의견

1)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3년→2년) 변경

- 현행법령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법 제34조제7항)¹⁰⁾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¹¹⁾.

해당 규정은 그동안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조사가 4~5년 주기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져¹²⁾ 온 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되었으며, 다음 조사는 2022년에 처음 시행될 예정¹³⁾임.

- 개정안은 3년마다 실시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표준보육비용은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산정 등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되는 보육 현장의 실제 비용과 그 변화를 보다 시의성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10) 제34조(무상보육)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1)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12) '05년, '09년, '14년, '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실시

13) 부칙<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제2조(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 다만,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에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외에 인건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지수¹⁴⁾ 외에 최저임금 상승률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표준보육비용 조사 후 예산 반영의 시차를 고려¹⁵⁾할 때, 조사 주기 단축보다 조사된 표준보육비용 보정 방안 검토를 통해 비계측년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조사가 2022년에 시행될 예정¹⁶⁾임을 고려한다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아교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¹⁷⁾있고, 현행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조사 주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는

- 14)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 15) * (예) '22년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은 '23.3월 발표되고 '24년 보육료에 반영
- 16) 부칙<법률 제16251호, 2019. 1. 15.> 제2조(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 17)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7년까지 매년 실시되어 왔으나 '18년, '19년에는 미 실시되었고, '20년에 재 실시됨.

2)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 고시와의 형평성 고려

□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 고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경우 유치원과 같은 금액의 교육비(누리과정비)가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표준유아교육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경우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¹⁸⁾」에 따라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1인당 월 26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만 0세~만 5세)의 각 연령별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고, 표준유아교육비는 만 3세~5세 유아교육비(누리과정비) 산정의 기준이므로 표준보육비용 및 표준유아교육비가 만 3세~5세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계측되고 있지만,

18) 「2021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만 5세	2015.1.1.~2015.12.31.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만 4세	2016.1.1.~2016.12.31.			
	만 3세	2017.1.1.~2018.2.28.			

만 0세~만 2세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연령대별로 각각 계측되고 있어, 두 비교 대상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준보육비용 결정 시 표준유아교육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의 구성항목에는 급식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교육비용의 구성항목에는 급식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아 1인당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가 각기 다르게 산출되어 유아교육의 질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 지원 수준이 동일하도록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용의 구성항목 비교 >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유아교육비 ¹⁹⁾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	구성항목		구성항목	구성요소
		입학금		
		수업료		
급여	① 인건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표준 인건비	교·직원의 기본급여
퇴직금, 퇴직적립금				교·직원의 제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③ (C)에 포함)	비정규직 인건비
시간외 수당 정액				* 학습보조, 행정보조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유아교육비 ¹⁹⁾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구성요소	구성항목		구성항목	구성요소	
실내 교재·교구	② 교재 교구비		⑥ 표준교육 활동경비	교구비	
소모품				재료비	
실외 교재교구비	설비비				
비품성 교재교구비	③ 시설비		⑦ 표준공통 운영경비	기본적 경비	
시설유지비					
보육교직원복리비					
일반운영비	④ 관리 운영비				
위생관리					
시설관리용역					
시설물유지보수					
공공요금				공공요금	
영유아복리비				학생복리비	
급간식 재료비	⑤ 급간식비	급식비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만 3세~만 5세)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가 누리과정비로서 1인당 월 26만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누리과정비)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참고하되,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²⁰⁾하도록 하고 있고, 유아교육비의 범위에는 ① 입학금, ② 수업료, ③ 급식비,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규정²¹⁾되어있어, 최종적으로 정부가 지

19) 유아교육비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아(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의 무상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20)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

원하는 유아교육비(누리과정비)는 급식비를 포함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만 0세~만 2세) 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항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의 분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시책사업 등(전액 지방비)으로 급·간식 재료비를 추가로 지원²²⁾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도별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²³⁾하고 있음.

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2)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3) 급식비 전체 지원(11곳):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급식비 일부 지원(2곳): 전남(만 4~5세), 경북(공립, 사립 21개 시군)
급식비 미지원(4곳): 서울, 부산, 대구, 경남(공립은 유아학비 활용, 사립은 유아학비 및 수익자 부담금 활용)

라.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표준보육비용 주기 변경(3년→물가변동률 감안 2년) 관련

표준보육비용에 보육현장의 실제 비용 및 그 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그간 4~5년 주기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물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측함('05, '09, '14, '19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실시). 표준보육비용 조사 후 예산 반영의 시차를 고려²⁴⁾할 때, 조사 주기 단축보다 조사된 표준보육비용 보정 방안을 검토를 통해 비계측 년도에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21년 5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오른 것을 보면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중요 산정기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급여가 어린이집 지출에서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상승률 역시 표준보육비용의 중요한 산정기준이 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 고시 등 참고하여 표준보육비용 결정 관련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비용의 기준 자료로 쓰이는 표준보육비용이 표준유아교육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유아교육비용(누리과정부담비용) 고시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같은 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원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22년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은 '23.3월 발표되고 '24년 보육료에 반영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어린이집 유아반(만3~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규정 관련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교육비 지원 수준이 유사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급식비를 포함한 누리과정 비용('21년 2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급식비 분리의 필요성·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비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차액보육료, 시책사업 등(전액 지방비)으로 급·간식 재료비를 추가 지원²⁵⁾함.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외에 시·도별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비를 추가 지원²⁶⁾함.

교육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유치원간 급식비·교육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제1항과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지역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서울, 부산지역은 2022년 시행 예정을 논의하고 있음.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식비를 분리하여 양질의 교육제공이 가능하므로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역시 교육비와 급식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25) 보육사업안내 지침 부록(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급·간식 재료비 최저단가(영아반 1,900원 이상, 유아반 2,500원 이상)를 규정

26)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전체 지원 11개, ㉡일부 지원 2개(전남 만4~5세, 경북 공립·사립 21개 시군), ㉢미지원 4개(서울, 부산, 대구, 경남)

【참고 1】	시·도별 수납한도액 현황(2021년 기준)
--------	-------------------------

(단위: 원)

구분	보육료 (A)	평균 수납한도액(B)		평균 차액보육료(C-B-A)	
		민간	가정	민간	가정
평균	260,000	334,495	343,012	74,495	83,012
서울	260,000	417,333	417,333	157,333	157,333
부산	260,000	323,000	323,000	63,000	63,000
대구	260,000	322,333	331,000	62,333	71,000
인천	260,000	356,667	356,667	96,667	96,667
광주	260,000	317,000	333,000	57,000	73,000
대전	260,000	332,000	332,000	72,000	72,000
울산	260,000	323,333	337,333	63,333	77,333
세종	260,000	329,333	327,000	69,333	67,000
경기	260,000	337,667	356,000	77,667	96,000
강원	260,000	322,333	340,667	62,333	80,667
충북	260,000	332,667	348,333	72,667	88,333
충남	260,000	352,477	360,933	92,477	100,933
전북	260,000	321,333	323,333	61,333	63,333
전남	260,000	331,333	350,000	71,333	90,000
경북	260,000	327,000	332,000	67,000	72,000
경남	260,000	322,667	344,667	62,667	84,667
제주	260,000	317,943	317,943	57,943	57,943

가. 개정안의 내용

[illegible]

현행	개정안
<신설> 8. (생략) ②·③ (생략)	7의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령에서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맞벌이 등 현실적으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의 부모가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인 경우에도 영유아 돌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보육이 취약해질 여지가 높음.

□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의 부모가 중증질환자인 경우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로 판단하여 해당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참고로 「소득세법」 「의료금

여법 시행령」 등에서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중증질환자 등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는 타 법령 사례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가. 해당 거주자
 -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다. 장애인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 18세 미만인 자
 - (2) 65세 이상인 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다. 삭제 <2016. 6. 28.>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그만큼 일반대기자의 대기기간 장기화가 수반되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의 범위, 치료기간, 환자 돌봄에 따른 가정보육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증질환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중증질환’, ‘중증난치질환’을 정의하고 있음.

< 중증환자와 유사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타 법령 사례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래진료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질환을 말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산정특례기준"이라 한다) 별표 3의 중증질환(같은 별표 제1호의 암과 제4호의 중증화상은 같은 호에 따라 각각 등록한 환자의 암과 중증화상에 한정하며, 제5호의 중증외상은 제외한다)
2. 산정특례기준 별표 4의 희귀질환과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같은 별표에 따라 각각 등록한 환자의 질환에 한정한다)
3.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질환(같은 조 제1항의 암 및 중증화상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환자의 암 및 중증화상에 한정하며, 중증외상은 제외한다)
4. 의료급여기준 별표 2의 질환(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환자의 질환에 한정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이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정신질환 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영유아의 부모가 될 수 있는 20~49세에 해당하는 중증난치질환자의 수는 178,031명, 희귀질환자의 수는 76,242명인 것으로 확인됨.

< 중증난치질환·희귀질환 산정특례적용 연령별 인원수 >

'20.12.31.기준 (단위 :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0~49세	합 계
중증난치질환 ²⁷⁾	15,948	20,741	23,906	32,507	37,242	47,687	178,031
희귀질환 ²⁸⁾	14,510	14,215	13,661	16,616	17,240	21,049	76,242

※ 뇌혈관, 심장질환 및 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으며 사유(입원 등) 발생 시 특례 적용

※ 보건복지부

- 참고로, 동 개정안 외에도 중증환자가 가족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신동근 의원안 의안번호 제210204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7)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고시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에 따른 지정 질환

28)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희귀질환 기준 및 지정 절차)에 따른 지정 질환

다. 보건복지부 의견

- (수용곤란) 현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만성신부전증을 포함한 신장 장애인, 심장 및 만성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선 입소대상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우선 입소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중증질환’에 대한 정의가 개별 법령마다 상이하며, 의료 관련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상에 의료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현행 입소우선순위 기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자료: 보건복지부

3. 보육 이념의 범위에 국적을 포함(고영인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하고 있는 보육 이념의 범위에 국적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보육 이념) ①·② (생략)	제3조(보육 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u>인종</u>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③ ----- ----- ----- <u>국적, 인종</u> ----- ----- ----- -----.

나. 검토의견

-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인 헌법은 최상위 법 규범으로서,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뿐만 아니라 국민을 전제로 “국민의 권리·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규정에 따라야 함.

이처럼, 헌법은 “국민”에 관한 기본권을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지칭하고 있음.

□ 이에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제23조의2²⁹⁾에 따라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³⁰⁾」에서 국민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난민 인정 아동은 포함하였으나 외국국적 아동을 제외하였음. 이에 이주인권단체에서는 인권위에 해당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하였음.

그런데, 교육청은 초·중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급 배제 방침에 따른 차별 문제가 대두되자, 외

29)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27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국국적의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를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을 것을 시정권고 하였음.
- 이처럼, 사회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은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적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이 보육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하고 있는 보육 이념의 범위에 국적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³¹⁾이고, 특히 영유아의 생존·교육에 관한 권리는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차별 없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3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제1항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 국내 외국국적 영유아 수 현황 >

(단위: 명, '20.12월 기준)

구분	합계	0세 반		1세 반	2세 반
		0세	1세	2세	3세
합계	25,830	5,242	7,064	6,817	6,707
등록 외국인	25,405	5,155	6,958	6,701	6,591
거소신고 외국인*	425	87	106	116	116

* 외국인 중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은 제외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동 법의 정책 기본방향과 방침을 표현한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³²⁾에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국민”을 대상³³⁾으로 하고

3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 ⑩ (생략)

3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있기 때문임.

- 또한,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내국인 수준의 보육 지원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바, 이는 외국인 복지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농어촌·장애 아동 등 국내 취약계층 지원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합법적 체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22년 재정추계(국비)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지원대상 ¹⁾	13,997	2,486	5,488	6,023
합계 ²⁾	75,794	19,833	30,363	25,599
부모보육료	48,723	10,346	20,093	18,284
기관보육료	27,071 ³⁾	9,487	10,270	7,314

1) '22년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월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 48.8% 가정

2) '22년 지원단가, 국고보조율은 정부안 기준('21년 대비 3% 인상, 보조율 69.5%)

3) 외국인 아동의 부모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이용률 증가로 현재 지원 중인 기관보육료('22년 222억원 추정)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합법적 체류 외국인 영유아 수(총 2.6만명)에 어린이집 이용률 (48.8%)을 고려할 경우, '22년 지원 대상은 14천명, 536억원 추가*
소요 예상< 既지원 중인 기관보육료는 제외('22년 기준으로 추계시 222
억원 예상)>

- 한편,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인 헌법에서도 국민을 전제로 한 “국민”에 관한 기본권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는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³⁴⁾의 경우에는 보육기관에서의 외국인 아동의 입학 기피 가능성,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 중에 있음.

34)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기관보육료)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에 보육교사 인건비 30~80% 보조

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영유아의 인권을 고려하여 합법적 체류 중인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외국인 아동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지원을 위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어린이집에 보조금³⁵⁾을 지원 중임.

다만, 이용료 개념의 보육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민’에 한해서 지원³⁶⁾하고 있고,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내국인 수준의 보육지원은 他제도와는 정합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상황과 부모보육료와 대체 관계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 등 他지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 검토) 영유아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육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내국인 수준의 보육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지원 필요성 및 재원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등 보육료와 유사-대체 관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35) (기관보육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5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에 보육교사 인건비 30~80% 보조

36)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영유아보육법」은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가정양육가구 아동 연령에 따라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의 제1부(실질적 규정) 제7조(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 국적의 아동은 보육, 교육, 돌봄의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 또한, 국내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동 역시 법적 신분이 없음.

반면, 외국인 자녀의 수는 2018년 기준 226,145명(행정안전부. 2020년 행정자치통계연보)으로 2013년 기준 191,328명(안전행정부. 2013년 안전행정통계연보)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임.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중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일맥상통하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등록, 미등록)의 자녀는 출생신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인재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기능, 지정의 기준·기간·절차----- -----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며, 동 사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되어 있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음.³⁷⁾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상담 콘텐츠 개발, 어린이집 평가 연구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 관련 교육·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대체교사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1년 5월말 기준 전국에 총 123개소(중앙 1, 시도 18, 시군구 104)가 운영되고 있음.

- [붙임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37)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업무 위탁에서 지정으로의 변경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업무 위탁 방식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기관 지정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입법된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업무를 수탁받았으나,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한국보육진흥원이 계속 이를 수탁받고 있음.
- 동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³⁸⁾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으로서,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과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절차를 주기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고³⁹⁾,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매 3년 또는 5년마다 동 절차를 반복하고 있음.⁴⁰⁾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 위탁 공모에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기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수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8)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3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0) 2010년 1월 1일, 2013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위수탁계약(5년 기간) 체결
※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위수탁계약 체결 필요

□ 법률상 사업 및 기능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평가 및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시간제보육 관리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관여하게 되어 있고 두 기관의 직무 연계성이 높으므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보임.

< 한국보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거 규정 및 사업 비교 >

구분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법	■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업무(영유아보육법 제8조제2항)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기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	■ 추진 사업 범위 1. 어린이집 평가 사업^① - 어린이집 평가 운영 - 평가인증 사후관리 2.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취약보육 지원 사업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 추진 사업 범위 1. 어린이집 지원 사업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 평가 컨설팅^① · 보육과정 컨설팅 · 재무회계 컨설팅^④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교육 실시 - 표준보육과정 강사진 연수

구분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② - 보수교육기관 평가 사업 -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③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운영 -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서울시 위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3. 공공보육정책 지원 사업 - 국공립 확충·품질관리 전담사업^④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④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⑤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지원 사업 4. 기타 보육정책 조사·기획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⑥	- 아동학대 예방교육^⑥ - 보육교직원 상담 운영지원^② -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원 - 보육정보지 제공 - 부모모니터링(시도,시군구: 제공)^⑤ 2. 양육지원 사업 - 공통 부모교육 기획·운영 - 부모상담 운영 - 양육서비스 운영 지원 ·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체험)실 · 시간제 보육(시도: 관리, 시군구:제공)^③ 3. 센터운영 지원 사업 - 직원역량강화 교육(전국 센터장, 직원) - 대체교사 운영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주: 음영 표시는 관련·연계 업무 또는 기능을 의미함.

□ 개정안과 같이 지정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되는 기관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고, 일정한 위탁계약기간의 설정으로 인한 업무의 단기성이 해소될 수 있어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다 더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 법률의 세부적 설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개정안 제7조제4항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현행 위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를 정비하

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이 아니라 지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음.

□ 둘째, 고정적 지정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입법의도를 고려하면 「노후준비 지원법」의 입법례⁴¹⁾를 참고하여 법률에서 직접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법률의 체계·자구에서는 다음의 검토사항이 있음.

□ 첫째, 2021년 12월 9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법률 제18217호)이 있으므로 개정문을 그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7조제5항(중전 제4항)에서 “지정의 기준·기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의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관을 일의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상충되고, “지정의 기간”을 위임하여 기간한계를 둘 여지를 주는 것은 입법의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의 절차”만을 위임하거나 또는 특별히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정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1)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이하 생략)

- 셋째, 개정안의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현재 남아있는 위탁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지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⁴²⁾, 입법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법률 시행일부터 지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³⁾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함.

다만, 해당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바, 부칙상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항인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를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보육진흥원: 수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용함.

42) 개정안 부칙 제2조(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3) 현재 위수탁계약은 5년 기간의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임.

관련 입법례: 「동물보호법」 부칙(제10995호, 2011.8.4.) 제3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보호시설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는 제10조의 지역센터로 본다.

【참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21. 5. 기준) ⁴⁴⁾
------	---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A)		시군구수(B)	설치율(A/B)
계	123	1	18	104		228	45.6%
중앙	1	1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
부산	9	-	1	8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16	50%
대구	2	-	1	1	동구	8	12.5%
인천	7	-	1	6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10	6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
대전	2	-	1	1	대덕구	5	2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5	100%
세종	1	-	1	-	-	-	-
경기	31	-	2	29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동부권 부속사업장),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31	90.3%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5	-	1	4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11	36.4%
충남	3	-	1	2	아산시, 천안시	15	13.3%
전북	5	-	1	4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14	28.6%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주시	22	13.6%
경북	6	-	1	5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23	21.7%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와 제주시센터 운영 중	2	50%

44) 자료: 보건복지부

5.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 야기로 공공위험 발생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김성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 점검 미흡으로 야기된 중대한 파손이 어린이집 이용자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벌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벌칙) ① 삭제 <u><신설></u>	제54조(벌칙)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현행	개정안
③·④ (생략) <신설>	<u>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이 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근거 규정⁴⁵⁾을 두고 있음.

□ 그런데 현재 「교육시설법」의 벌칙 규정은 유치원에는 적용되나 어린

45)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이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전 개선을 위하여 「영유아교육법」에 「교육시설법」에 준하는 안전점검 미실시 및 불성실 수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54조제6항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망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 형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⁶⁾,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⁴⁷⁾을 규정하고 있음.

46)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어린이집 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⁴⁸⁾의 안전점검 의무를 적용받는 여러 사회복지사업⁴⁹⁾이 있는데, 개정안은 안전점검 의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구별되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간 법적 규율의 균형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 (별칙 신설: 일부 수용)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 안전보호의무 태만에 대한 별도의 별칙규정이 없어 이용대상에 차이가 없는 유치원과 동일 수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데 동의

다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 검토

또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위축 및 다른 사

4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31개 사회복지시설

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 필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신중 검토) 이용대상에 차이가 없는 유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배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

2) 법무부: 신중 검토

- 현재 안전점검 의무위반에 대해 개별법상 형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회복지 기관과 균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개정안의 처벌 범위 비교
-------------	--------------------------------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21.1.26), 시행('22.1.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적용대상 및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사항 등(국무회의 통과 '21.9.28 / 공포 대기 중)
- 관계법령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중대 산업 재해	산업재해(종사자)로 5인이상 사업장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구체적 열거	모든 어린이집 (약 35,000개소)
	중대 시민 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설치, 관리상의 재해(시설이용자)	모든 지하철역사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2천㎡이상 대합실 연면적 1천㎡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	
처벌 수위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6개월이상 치료 부상 2명이상 / 직업성질환자 1년에 3명이상 발생할 경우 ⇒ 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동일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10명 이상 /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3명이상 경우 ⇒ 사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개정 안	사망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자 5년이하 징역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 : 보건복지부

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적성·인성검사 실시 (하영제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 원장은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는 등----- ----- -----.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 -----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의 내용·방법, 제2항제2호에----- -----.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⁵⁰⁾에 따르면 보육교사 1·2·3급의 자격 취득 시에는 별도의 시험 및 인·적성검사 없이 서류심사⁵¹⁾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 시에도 일부 기관⁵²⁾을 제외하면 인·적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중

- 5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51) 현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3급) 등을 통한 학점 이수 방식의 개방형 양성체계임.
- 52) ① 국공립어린이집
- 서울, 대구 사회서비스원: 보육교사 채용시 인적성 검사 실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풀’ 채용 시 실시 후 폐지(2019)
- ② 직장어린이집
- 푸르니, 한솔, 모아맘, 삼성 등 보육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검사 실시

- 반면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양성과정 중 인·적성 검사를 총 2회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증 부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⁵³⁾,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사이에 자격 요건의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사이의 자격 요건 차이를 완화하는 것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적성 검사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적 특성에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그 외에 보육교사 처우·근무

53)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부적격 판정자에 대해 재시험, 면접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양성기관마다 제도가 상이함.

최종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미발급함.

환경 및 투명성·부모 참여 등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적성 검사를 이미 도입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비록 아동 수 대비 학대 사건 발생 비율이 어린이집의 경우가 유치원의 2배 정도이나, 유치원의 평균 재원 연령이 더 높은 점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적성 검사 도입의 아동학대 저감 효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대비 학대사건 발생 비율 >

구 분	어 린 이 집	유 치 원
아동학대 발생 (A)(건)	658	129
재원 아동 수 (B)(명)	1,244,396	612,538
아동 수 대비 학대사건 발생 비율 (A/B*100)	0.05%	0.02%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0), 재원 아동 수 통계

□ 셋째, 인·적성 검사의 설계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집행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다르게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3급) 등을 통한 학점 이

수 방식의 개방형 양성체제이므로 다양한 양성과정에 대해서 인·적성
검사를 어느 단계에서 시행할 것이고, 평가 및 인증 기관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
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직원 자
격요건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함.

□ 이와는 별도로, 우리부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인 학과제 도입시 학과 교육과정에 적
성·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교육과 연계하여 예비 보육교사의 적성
과 인성 함양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현 보육교사 양성체제는 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3급) 등을 통한 학점 이수 방식의 개방형
양성체제임.

□ (한국보육진흥원) 유치원 교사의 경우, 3~4년제 대학교를 통해서만 배
출되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경우 2~4년제 대학, 보육교사교육원, 학점
은행제 등 다양함(개방형 양성체제). 이에, 다양한 배출경로에 맞는 표
준안 개발, 시행 지침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함.

원장·보육교사 자격은 일정 근무경력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승급형 자격체계),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 실시한 적성·인성 검사를 승급 시 재실시하게 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계 및 국민 전체에도 유익하다고 보나, 2013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7.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인재근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u>
제56조(과태료) <u><신설></u>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불응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⁵⁴⁾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법 제14조의2⁵⁵⁾에서는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및 미이행 사업장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제44조의2)⁵⁶⁾ 및 이행강제금(제44조의3)⁵⁷⁾ 부과도 같이 규정하고 있음.⁵⁸⁾

5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56)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7)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58) 참고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부과·징수가 가능하며, 미설치 기간·사유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3억 원의 부과가 가능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8년 6개, 2019년 4개, 그리고 2020년 19개 등 매년 상당수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제1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⁵⁹⁾,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 불응에 대한 일반적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1억원 이하의 고액 과태료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이 행정조사에 불응 시 상한 1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입법례가 여러 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⁰⁾

59)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면 사업장의 실태조사 불응을 방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확인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한 경우, 명단공표 외에 별도의 경제적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장 측의 전략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임.

* 미이행 사업장의 입장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보다, 실태조사에 불응하여 명단공표 대상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

-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참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및 미이행 현황
-------------	--------------------------------

<2017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20년	1,432	1,301(90.9%)	980	321	131(9.1%)
'19년	1,445	1,303(90.2%)	987	316	142(9.8%)
'18년	1,389	1,252(90.1%)	957(68.8%)	295(21.2%)	137(9.9%)
'17년	1,253	1,086(86.7%)	839(66.9%)	247(19.7%)	167(13.3%)

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사업장 유형별 미이행 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

계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기업
131	9	6	3	4	109
(100.0)	(6.9)	(4.6)	(2.3)	(3.1)	(83.2)

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20.12.31. 기준

< 미이행 사유별 현황 >

(단위 : 개소, %)

계	장소 확보 어려움	보육 대상 부족	설치 비용 부담	운영 비용 부담	정보 부족	이행 규정 부재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262	91	34	33	22	9	2	71
(100.0)	(34.7)	(13.0)	(12.6)	(8.4)	(3.4)	(0.8)	(27.1)

주: 미이행 전체 사업장 중 응답한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20.12.31. 기준

8.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규정의 신설 (안민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어린이집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급식 관리) (생 략) <u><신 설></u>	제33조(급식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 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 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무상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⁶¹⁾을 도입하였고, 당초에

는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여 실시함.

□ 무상보육⁶²⁾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4항⁶³⁾에서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정하고 있음.⁶⁴⁾

61) 누리과정 제도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이며, 이 외 누리과정의 재원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있음.

62)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4) 「영유아보육법」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 >

구성 항목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퇴직금 ·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급·간식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교구비 등
관리운영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표준보육비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⁶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 비용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⁶⁶⁾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이를 설치한 사업주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⁶⁷⁾

6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66)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67) 「영유아보육법」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8조⁶⁸⁾는 각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 보육료⁶⁹⁾ 및 기타 경비의 상한선(수납한도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수납한도액)와 정부지원 보육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⁷⁰⁾을 이용자로부터 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자체가 해당 차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참고1] 시·도별 수납한도액 현황(2021년 기준)

어린이집	▪ 총비용 = 보육료(순보육비) + 필요경비(추가비용) ▪ 보육료의 결정 -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보육료 외 추가 수납 불가능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보육료 외 부모로부터 추가 보육료 수납 가능하나,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로 통제 ▪ 필요경비의 결정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결정
------	--

□ 이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는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에 포함되고, 보육료의 한 항목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급·간식 관련 비용⁷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하여

68)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9) 「202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p.92
보육료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재료비(1회)**, **간식 재료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가 포함됨

70) 차액 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의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만 발생

71) 급식 재료비(1회), 간식 재료비(2회), 조리원 인건비, 급식 관련 설비 유지비(관리운영비)

지원 중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급·간식 비용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⁷²⁾

- 따라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 제공을 위한 충분한 비용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린이집 급·간식 비용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의 무상보육 체계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 보건복지부 의견: 신중 검토

- 친환경 등 고품질 급식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현행 입법체계상 어린이집 무상보육 관련 비용 중 급·간식 비용 지원 관련 사항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어린이집의 급·간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미 법령으로 규정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와 지방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별도 입법 필요성·실익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72) 인천, 광주 등 8개 시·도, 129개 시·군·구에서 지방비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 중

9.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의무적 조사·점검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고민정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CCTV의 설치·관리·열람 실태 및 영상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u><신설></u> <u><신설></u>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열람 실태 및 그 영상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2. 아동학대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CCTV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주기적 CCTV 조사·점검의 목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조사·점검 대상에 영상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철저히 제한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열람이 가능함.⁷³⁾
-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특별한 신고나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 조사 사항인

73) 「아동복지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를 중심으로 정기점검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영상 열람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당초 입법 취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의 책무⁷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이상 CCTV 영상 열람을 통하여 아동학대 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입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점검을 위한 적절한 인력·예산 전달체계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영상 열람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점검의 실례로 2021년 10월 10일부터 1달간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집 CCTV 실태점검이 있으나,

동 점검의 대상 어린이집은 35개소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전체 어린이집 354개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조사 방식 역시 표본 열람 방식으로서 조사·점검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74)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현행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영유아 등 정 보주체의 권리침해 여부를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 중이고, 제15조의5 제1항 제2호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CCTV) 조사 규정을 두고 있음.
-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반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열람제도 오남 용 등 우려

문 의 처
02)6788-5503